

현 행	개 정 안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에의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기재	
부 칙	부 칙
이 영은 1993년1월1일부터 시행

현 행	개 정 안
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1993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7월1일.....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부공고제1993-59호

- 1. 개정이유**

주택에 대한 투자행위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이 1992년 12월8일 동법시행령중개정령이 1993년 2월20일 공포되어 1993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가. 현재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등록을 년 1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자본금 및 기술능력의 적합여부등은 협회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으며, 자본금의 증액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예금의 이율, 사용용도는 건설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기타 예금의 실시지역과 종류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음.
 - 다.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공고안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모집시에는 최초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도록 하였음.
 - 라. 사업주체와 시공보증회사가 모두 파산등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10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들이 공사를 계속 시공 할 자를 지정, 공사를 완료한 후에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마. 현재는 공동주택을 제건축하는 경우 안전진단실시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축사협회만 지정되어 있었으나 한국건설안전연구원을 추가로 정하고 진단 결과는 진단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하였으며 진단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기준, 진단수수료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부공고제1993-142호

1. 개정이유		〈공업화주택의 생산기준항목〉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92.12.8. 법률 제4,530호)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93.2.20. 대통령령 제13,851호)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과 기타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콘크리트조립식부재에 대한 생산설비·품질관리시설기준
		○경량조립식부재에 대한 생산설비·품질관리시설기준
		나. 공업화주택의 인정신청서 및 인정서등의 서식을 정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92.12.8. 법률 제4,530호)에 따라, 주택의 대량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5월13일까지 다
생산·공급체계에 적합한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을 정함.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조:주택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공업화주택의 성능기준항목〉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능: 구조안전성능, 방·내화성능, 폐난·추락방지성능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거주성능: 환기 및 기밀성능, 열환경성능, 음환경성능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내구성능: 방수 및 배수성능, 방청 및 방부성능, 유지관리성능		